

『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○지방자치법 개정(시행 '22. 1. 13.)으로 인사가 독립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등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규칙 제정 목적 및 정의·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제1장)
-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(제2장)
-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(제3장)
-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(제4장)
-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(제5장)
- 공무원 교육, 행동강령책임관에 관한 사항(제6장)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) 개정으로 인사가 독립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등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,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과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등 상위법 근거에 위배되거나 상충된 조항은 없으며,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 등을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5. 참고사항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
제24조(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.